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83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62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김문수의원안(2213183)

가.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23.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4.

2. 안상훈의원안(2213362)

가. 발 의 자 : 안상훈 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29.

다. 회부연월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문수의원안(2213183)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청년층이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부담을 지는 이러한 사회구조는 주거,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및 제3항 삭제).

2. 안상훈의원안(2213362)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나. 검토의견

1.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은 기초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대하여 ①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②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법 제16조의2제3항은 제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5구간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환산소득 610만원)인 경우에는, 상환기준소득 (2,851만원)을 초과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되, 이자 면제 기간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현행 대출원리금 이자면제 대상>

구분	사업 대상	
이자면제 대상	병역 복무자 (제16조의2 제1항)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제16조의2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의2 제3항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 (단,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 동안 이자 면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2. 검토의견

1) 이자 면제 대상 확대(김문수 의원안)

- 개정안(김문수 의원안)은 학자금 대출 ①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존 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인 자(6구간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793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②이자면제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구분	소득분위	이자면제			
		현행	⇒	김문수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이자면제 대상	기초·차상위 계층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의무상환개시 이전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1-5 구간	의무상환개시 이전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단, 졸업 후 2년 이내 기간 제한)	⇒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 의무상환개시 이전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기간 제한 삭제)	의무상환개시 이전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기간 제한 삭제)
	6구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없음		6구간 확대 (면제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없음
	7-10구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주: 의무상환개시란 상환기준소득(2,851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함.

- 개정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경감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장학금 산정구간 개편과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¹⁾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분위’와 차이가 있음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산정 소득 구간 개편을 추진중인데,

이에 따르면 소득분위 1~3구간은 1구간으로, 4~6구간은 2구간으로 통합됨에 따라, 6구간은 4~5구간과 동일한 범주로 속하게 됨.

- 통계청은 각 구간별 인원을 균등배분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분위를 측정하고 있으나, 국가장학금 산정 시 소득분위는 구간별 인원이 균등하지 않아 개편(안)과 같이 각 구간별 인원을 약 20%로 맞추어 균등하게 배분함을 통해 소득구간별 인원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통계청의 구간과 차이가 적도록 하기 위하여 구간 개편을 진행 중임.

<2025년 학자금 지원 구간 및 개편(안)>

구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현행	기준중위 소득비율	수급 기준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9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인원(%)	6.3%	8.1%	6.3%	6.6%	6.6%	3.3%	9.6%	5.9%	12.4%	15.5%	19.3%
	경계값	-	183만원	305만원	427만원	549만원	610만원	793만원	915만원	1,220만원	1,829만원	1,829만원
	기준 중위소득 비율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	-

1)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개편 (안)	구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인원(%)	6.3%	21%	19.5%	18.4%	15.5%	19.3%
	월소득 기준	-	427만원	793만원	1,220만원	1,829만원	1,829만원

자료: 교육부

2) 이자 면제 기간 확대 (김문수 의원안, 안상훈 의원안)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①기초·차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의 이자를 면제하고 있으나,

②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는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의 이자는 면제하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즉, 기초·차상위 계층 등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 자체는 유예되지만, 이자는 납부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바,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

□ 현재 학생들은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차액만큼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고 있음.

그런데 대출자가 상환기준소득인 2,851만원을 초과하여 상환을 개시하는 시점이 졸업 후 평균 3년으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2025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급액>

구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장 학 금	I 유형		전액	600만원				440만원		360만원		100만원	-
	다 자 녀	첫째, 둘째		610만원			505만원		465만원		135만원		
		셋째 이상		전액								200만원	

자료: 교육부

또한,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체납자가 2020년 36,236명에 비하여 2024년 54,241명으로 약 1.7배 상승하는 등 원리금 상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실직·폐업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있는 인원 역시 2020년 6,871명 대비 2024년에 12,158명으로 약 1.77배 늘어나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상훈 의원안의 경우는 제16조의2 제3항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김문수 의원안은 제16조의2 제3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 효과가 차이가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김문수 의원안)에 따른 이자 면제 여부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졸업 전 상환기준소득 초과	이자 부과	이자 면제
졸업 후 2년 이내 상환기준소득 이하	이자 면제	
졸업 후 2년 이내 상환기준 소득 초과	이자 부과	
졸업 후 2년 경과 후 상환기준소득 초과	이자 부과	
졸업 후 2년 경과 후 상환기준소득 이하	이자 부과	이자 면제

자료: 교육부

즉, 조문 구성으로는 김문수 의원안에 의할 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졸업 전의 경우에는 이자가 면제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현행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와의 충돌 우려는 없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의 효과를 추계해 보면, ①현행 1~5구간 학생들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자 면제를 받고 있는 학생은 189,489명인데,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년이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던 학생 약 14만명(138,459)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개정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의 범위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6구간 ICL 대출자 77,896명에게 효과가 발생함.

<이자 면제 확대에 따른 대상 인원>

(단위: 명)

구분		현행 대상자	신규 대상자
이자면제 대상	1~5구간	189,489	138,459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인 대상자)
	6구간	0	77,896
	합계	189,489	216,355

자료: 교육부

- ☐ 이를 바탕으로 재정소요 예측치를 살펴보면, 현행 1~5구간에 대한 이자면제액 대납에 따른 재정소요는 92억 4,800만원이나, 1~5구간에 대한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경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학생들의 이자면제액 대납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은 74억 6,100만원임. 또한, 6구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42억 600만원으로 예측되어 총 116억원 추가 소요가 예상됨.

<이자 면제 확대에 따른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 이자면제액				개정안에 따른 이자면제액				추가소요
	지원기간	대출잔액 (b)	1인당	이자 면제에 따른 재정소요 (A=b*1.7%)	지원기간	대출잔액 (e)	1인당	이자 면제에 따른 재정소요 (B=e*1.7%)	
1~5구간 ('24.7~)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	544,016	2.87	9,248	재학 기간 +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1,421,801	4.34	24,171	7,461
6구간 ('26.7월 시행)	이자지원 없음	-	-	-		494,845	6.35	8,412	4,206
합계		544,016	2.87	9,248		1,916,646	4.57	60,539	11,667

자료: 교육부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